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2026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3. 12. 13.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 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26.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27.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3.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5. 토지 등의 취득·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
- 6.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7.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 8. 국가·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9.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136”을 “135”로 하고, 일반직 계 “135”를 “13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1”을 “130”으로 한다.

별표 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 2026년 12월 28일)

총계	4
일반직 계	4
5급 이하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도시계획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4.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9조(도시계획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4. (현행과 같음) <u>25. 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u> <u>26.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 <u>27.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u>
제10조(시설사업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건설사업의 총괄·조정</u> 2. <u>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u> 3. <u>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u> 4. <u>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u> 5. <u>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u>	제10조(시설사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건설사업의 총괄·조정</u> 2. <u>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u> 3. <u>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u> 4. <u>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u>사항</u> 6. <u>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u> 7. ~ 10. <u>삭 제</u> 11. <u>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12. <u>토지 등의 취득·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u> 13. <u>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u> 14. <u>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u> 15. <u>국가·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u> 16. <u>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u> 제17조(한시정원) ① ~ ④ (생략) <u><신 설></u>	5. <u>토지 등의 취득·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u> 6. <u>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u> 7. <u>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u> 8. <u>국가·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u> 9. <u>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u> 제17조(한시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u>
---	--

	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6</u>	<u>135</u>	-1
•	•	•	
•	•	•	
일반직 계	<u>135</u>	<u>134</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1</u>	<u>130</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5